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은 투명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

2025.12.1.(월) 조간

배포

2025.11.28.(금)

담당부서	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총괄팀	책임자	팀장	김석원	(02-3145-8782)
		담당자	수석 선임	박성진 최은정	(02-3145-8783) (02-3145-8787)

「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」 도입

- 하위 PG사의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 체결 등에 반영
-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'26.1.5.부터 가이드라인 시행

I

추진 배경

□ 온라인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PG사(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)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*가 확산됨에 따라,

*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상위 PG사가 가맹점 모집·관리 등을 위해 하위 PG사(n차 PG)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첩적 결제대행 구조†

† (예) 카드사 ↔ 1차 PG ↔ n차 PG ↔ 온라인 판매업자(재화·용역 공급)

-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·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 등도 야기되고 있으나,
- 현행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은 하위 PG사와 계약시 PG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는 등 PG업 규율에 한계

⇒ 이에,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 보완 등을 위한 「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」(행정지도)을 도입

- '25.11.26. 행정지도심의위원회(금감원)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으며, 전산·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'26.1.5.부터 시행 예정

※ 금번 가이드라인은 '25.10.1. 발표한 "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"(금융위·금감원)의 후속조치임

II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

- ◆ 선불업자, 상위 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시 재무건전성, 불법행위 위험 등을 반영하여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,
- 평가 결과 결제 리스크 수준이 높은 하위 PG사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·미연장, 중도해지 및 시정요구 등 실질적 대응 조치 필요

1 결제 리스크 평가

-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 및 갱신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,
 - 계약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
 -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를 평가·모니터링할 때,
 - 하위 PG사의 ①PG업 등록 여부, ②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, ③재무 상황, ④정산자금 관리 현황 및 ⑤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*을 확인**하여 반영할 필요
- * ①PG업 등록 여부, ②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, ③재무 현황 등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(파인, fine.fss.or.kr)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④정산자금 관리 현황은 PG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악 가능
- ** 상위 PG사는 결제 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료요구 및 조사 권한을 하위 PG사와의 서면계약 조항에 포함 (가이드라인 제4조 제3항)

◇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결제 리스크 평가 항목

- ①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여부
- ②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
- ③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 현황
- ④ 정산자금 관리 현황
- ⑤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

※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(안)을 제공할 예정

2

실질적 대응 조치

-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체결 및 갱신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,
 - 계약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여 하위 PG사에 대한 시정요구, 계약의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필요

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 대응 조치



III

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1

기대 효과

- 전자금융업자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토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하위 PG사와의 계약 체결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,
 - 불법·부실 PG사 정비 등에 따른 전자금융 이용자보호 강화 및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

2

향후 계획

-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의 전산·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'26.1.5.부터 시행될 예정
-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, 제도 시행 관련 애로·건의 사항을 수렴·개선해 나갈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토록 하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(이하 “결제 리스크”)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결제 리스크 평가) ① 전자금융업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여부
 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
 3.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
 4. 정산자금 관리 현황
 5.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
- ②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3조(기록관리)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관리 활동내역과 관련한 기록을 문서화(전자문서 포함)하여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장 계약 단계별 결제 리스크 관리

제4조(계약체결 및 갱신) ① 전자금융업자는 계약 체결 전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체결 및 갱신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전자금융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토록 하는 계약 체결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요구 및 조사 권한을 서면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계약이행 모니터링)** ① 전자금융업자는 계약기간 중 결제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.
-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결제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시정요구, 계약의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3장 보칙

- 제6조(세부사항)**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금융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** 이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